

2026. 7. 8.(수)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34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용역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사업개요】

- 용역명: 2026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청소용역
- 과업내용: 도로청소 22회, 폐기물처리 9톤 등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49,255,000원[추정가격 금44,777,273원]
- 개찰일시: 2026. 7. 14.(화) 11:00
-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0.(금) 10:00 ~ 7. 14.(화) 10:0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청소용역		
용역위치	천변도시고속화도로(당산교~문평대교) / 왕복 L=17.4km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용역개요	도로청소 22회, 폐기물처리 9톤 등(화물차 운전원 2, 청소원 3, 신호수 1)		
기초금액	금49,255,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7. 10. 10:00
추정가격	금44,777,273원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7. 14. 10:00
		개찰일시	2026. 7. 14. 11:00
부가가치세	금4,477,727원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 물량(9톤)은 추정(예상) 물량이며, 용역 완료 후 실제 배출하여 최종 처리된 수량(톤)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 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비와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 ④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다만, ①번(수집-운반업)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처리업체와 연계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및 참가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개찰 후 낙찰자는 아래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 원부 및 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비 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과업종료 후까지), 기타 발주부서 요청서류
- ※ 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같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1:00 /**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익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익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07,192	768,001	1,014,744	100,915	0	723,532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협약내용 이행

-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위 협약서 2항③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건·안전 관련 사항

-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과업 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라.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문의 및 신고사항

-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 270-8864
-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 ☎ 270-4353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7. 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액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2) 관급 재료비	
			(3) 직접노무비	
대 상 액 (1)+(2)+(3)			(4) 기 타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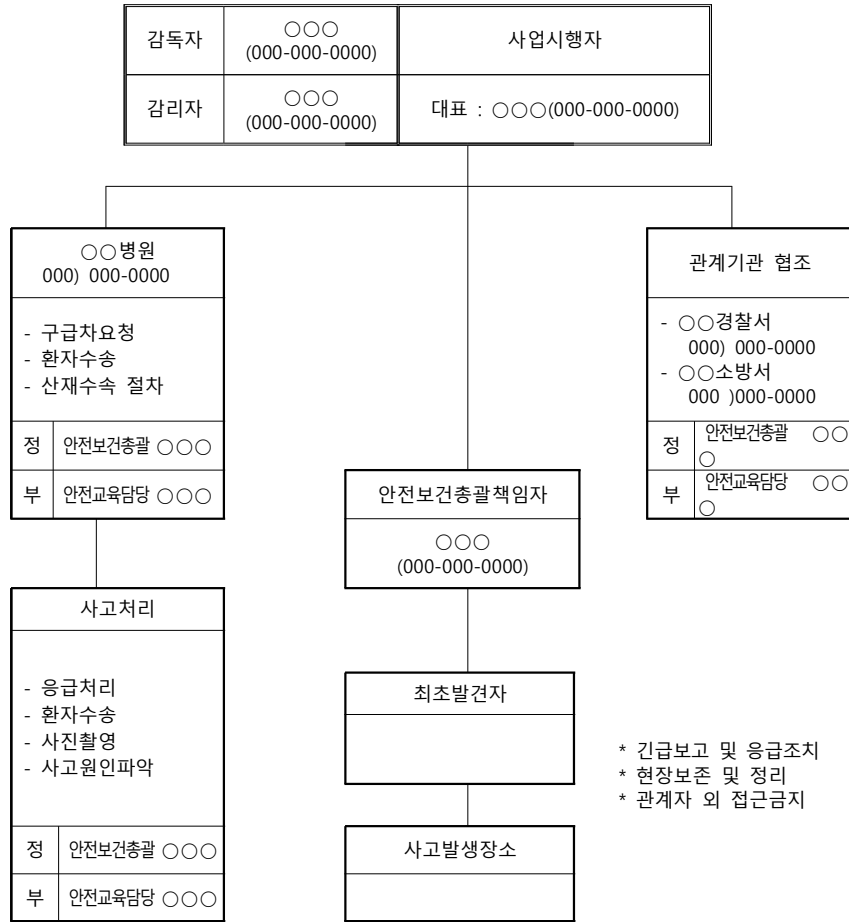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소계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40	
소계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소계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소계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는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